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40

발의연월일: 2020. 7. 14.

발 의 자: 박찬대·신동근·김홍걸

이동주・맹성규・강선우

김교흥 · 정일영 · 허종식

문정복 • 유동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에 연구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경우 징계 시효가 도과하여 징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연구윤리 확립을 유도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5호 신설). 법률 제 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학술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 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 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
| 특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 특례) |
|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 | |
| 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도 | |
|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 |
| 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 |
| 요구할 수 있다.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5. 「학술진흥법」 제15조제1항 |
| | 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및 「국 |
| | 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 |
| | 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
| | 관련 부정행위 |